

●관세청고시 제2025-53호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5-46호, 2025.09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5년 11월 13일

관세청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5-53호(2025.11.13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연 번	고 시 번 호(시 행 일)	품 명	비 고
646	2025-53호('25.11.13.)	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	
647	2025-53호('25.11.13.)	시치미 등 4건	
648	2025-53호('25.11.13.)	멸균용 폴리에틸렌 백 등 10건	

646.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5-53호 (2025.11.13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 전 공문
1	자동차용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(COVER GLASS); YG PE-K7	품목분류3과-68 (’21.01.06.)

○ 물품설명

- 차량 계기판 전면에 부착되는 보호용 커버글라스
- 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7007.19-1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7007.11-1000호

○ 변경사유

-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제7007.11-1000호 분류
(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647. 시치미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5-53호 (2025.11.13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 전 공문
1	Red pepper mixed with roasted orange peel, black sesame seed, etc.;(상품명 : 시치미 토가라시)	품목분류과-104797 (’05.07.07.)
2	Red pepper powder; SHICHIMI TOGARACHI(시치미 토우가라시)	품목분류2과-4006 (’20.05.12.)
3	Red pepper powder; S&B ASSORTED CHILI PEPPER NANAMI TOGARASHI 15g; JAPAN	품목분류2과-4973 (’14.07.25.)
4	Red pepper powder; ASSORTED CHILI PEPPER NANAMI TOGARASHI 300g; JAPAN	품목분류2과-4972 (’14.07.25.)

○ 물품설명

- 고춧가루에 오렌지껍질 등을 혼합한 소매포장된 혼합조미료

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0904.22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103.90-9030호

○ 변경사유

-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므로 제2103.90-9030호에 분류(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648. 멸균용 폴리에틸렌 백 등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5-53호 (2025.11.13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 명	종 전 공문
1	Bag of polyethylene; EZT BAG HDPE-TYVEK/TY8E16P0000-0001	품 목분류2과-933 (’14.02.07.)
2	Bag of polyethylene; EZT BAG HDPE-TYVEK/TY8E16P0000-0003	품 목분류2과-934 (’14.02.07.)
3	Bag of polyethylene; EZT BAG HDPE-TYVEK/TY8E16P0000-0004	품 목분류2과-938 (’14.02.07.)
4	Bag of polyethylene; EZT BAG HDPE-TYVEK(TY8ET6P1011-0007)	품 목분류2과-9776 (’13.12.30.)
5	Bag of polyethylene; EZT BAG HDPE-TYVEK(TY8ET6P1011-0003)	품 목분류2과-9765 (’13.12.30.)
6	Bag of polyethylene; EZT BAG HDPE-TYVEK(TY8ET6P1011-0008)	품 목분류2과-9770 (’13.12.30.)
7	Bag of polyethylene; EZT BAG HDPE-TYVEK/TY8ET6P1011-0009	품 목분류2과-9761 (’13.12.27.)
8	Bag of polyethylene ; EZT BAG, HDPE-TYVEK	품 목분류2과-9661 (’13.12.26.)
9	Bag of polyethyene; EZT BAG, HDPE-TYVEK	품 목분류2과-9659 (’13.12.26.)
10	Bag of polyethylene; ATMI Clean steam bag	품 목분류2과-5205 (’13.07.22.)

○ 물품설명

－ 플라스틱 필름과 부직포로 구성된 멸균 포장재

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3923.21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6307.90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부직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제6307.90-9000호 분류(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.